

인삼산업법 개요 및 추진시책

이덕노(농림부)

I. 인삼산업법 개요

1. 제정배경

- 정부의 인삼전매제도 폐지 및 자율화, 개방화 추세에 의한 인삼산업의 활성화 및 경쟁력 있는 사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제도적인 정비가 요구되어 새로운 법 즉 인삼산업법을 제정

2. 제정내용

인삼산업법 구성

- 본문 : 9장 33조 및 부칙 9조
- 장별내용 : 제1장(총칙), 제2장(인삼경작 및 수확), 제3장(계약재배 및 수급 조절), 제4장(인삼제조), 제5장(검사 및 수출입), 제6장(인삼류의 표기등), 제7장(인삼산업진흥기금), 제8장(보칙), 제9장(별칙)

목적 및 용어정의(제1~2조)

- 목적 : 인삼 및 인삼류의 경작, 제조, 검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규정
 - 인삼을 특산물로 보호, 육성하고 인삼산업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
- 용어정의
 - 인삼류 : 수삼, 홍삼, 태극삼, 백삼
 - 인삼제조 : 수삼을 원료로하여 홍삼, 태극삼, 백삼을 제조한 것

인삼산업육성을 위한 정부의 지원시책 추진근거 마련(제3조)

- 농림부장관은 인삼 및 인삼류의 생산성 향상, 수출촉진, 유통개선, 가격안정 및 연구개발 등 인삼산업진흥에 관한 시책수립 추진

인삼의 경작지정등(제4~9조)

- 인삼을 경작하고자 하는자 : 5년근이상의 경우 농림부장관의 경작지정, 4년근 이하의 경우는 경작지를 관할하는 국립농산물검사기관 또는 정부가 지정하는 인삼류 검사기관에 신고(임의규정)
- 지정경작자(5년근이상)는 홍삼, 태극삼, 백삼의 원료로 사용할 수삼을 수확할 때 경작지를 관할하는 국립농산물검사소 또는 지정검사기관에 신고,

검사원의 입회하에 수회

□ 계약재배 및 수급조절(제10조~11조)

- 정부는 수삼의 수급조절 및 가격안정을 위하여 인삼경작지 또는 생산자단체와 인삼제조, 가공업자간의 계약경작, 알선
- 인삼류의 가격안정을 위하여 필요시 인삼협동조합중앙회로 하여금 인삼류의 수매, 비축, 방출사업 실시

□ 인삼의 제조(제12~16조)

- 홍삼이니 5년근이상의 태극삼, 백삼의 제조업 : 일정기준 이상의 시설을 갖추어 농림부장관에게 등록
- 4년근이하의 태극삼, 백삼의 제조업 : 제조장 관할의 시장·군수에게 신고
- 제조자는 홍삼, 태극삼 또는 백삼을 연근별로 구분하여 제조하되 농림부령이 정하는 표준제조방법 준수

□ 검사 및 수출입(제17조~20조)

- 홍삼, 태극삼, 백삼의 판매 또는 수출의 목적으로 제조하거나 수출입시: 국립농산물검사소 또는 지정감사기관의 검사
- 5년근이상의 홍삼, 태극삼, 백삼의 원료삼의 판매시 또는 자가제조용 원료삼을 생산시 : 검사기관의 검사
- 인삼의 종자 또는 종묘 수출시 : 농림부장관이 고시하는 인삼종자, 종묘 검사기관의 검사
- 검사내용 : 품질검사(농약잔류검사 포함), 포장검사, 표시검사(검사의 기준, 방법, 장소등 검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령으로 규정)
- 미검사품 및 검사에 불합격된 홍삼, 태극삼, 백삼 : 판매 또는 수출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보관·진열 불가
- 인삼, 홍삼, 태극삼 또는 백삼, 인삼의 종자, 종묘, 껍질, 줄기, 잎, 꽃 등의 수출 또는 수입 : 농림부장관에게 신고

□ 인삼류의 표기 등

- 인삼류와 그 용기, 포장 등에 “고려삼”, “고려인삼”, “고려수삼”, “고려홍삼”, “고려태극삼” 또는 “고려백삼”的 용어표기시 : 검사기관에 등록

II. 인삼산업의 추진시책

1. 재배측면

- 수요량 확보를 위한 생산기반의 확대
- 안정생산추진 : 재배실패로 인해 실농이 되는 일이 없도록 추진
- 안전, 고품질의 생산추진 : 소비자가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는 안전성이 높은 인삼생산 및 품질좋은 인삼생산 추진
우량품종의 인삼종자 및 재배방법 개발
농약이나 비료를 가능한 적게쓰고 반드시 사용용법에 맞게 쓰도록해서 농약잔류문제가 안 생기도록 생산단계에서부터 관리
- 생산비 절감을 통한 경쟁력 제고 .
재배의 생력화 및 재배방법의 개선
생력화를 위한 기계개발 및 보급

2. 가공 · 유통측면

- 수요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 추진
다양한 인삼가공제품의 개발 등
- 신제품 개발확대 추진
- 자율경쟁에 의한 유통체계 구축
저질품의 유통방지 노력
중국 등의 밀수삼 유통방지 노력
- 종합처리장의 확대설치

3. 수출측면

- 해외시장 수출촉진 추진
해외시장에 대한 홍보강화
해외시장 조사 및 시장기호에 맞는 수출대책 추진
- 민간차원의 수출촉진 추진
국제식품박람회 참가지원